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의 규정에서 ‘~를 알면서’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II. 검토의견

- 안 제20조제4항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친족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¹⁾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에 따라 범죄가 은폐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1)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u><신설></u>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u>4.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u>

-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제4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3항·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됨.²⁾

2)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註: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위력 간음·추행 등 및 그 행위자에 의한 상해·치상, 살인·치사)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註: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 제1항의 죄(註: 강간등 살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註: 강간등 살인)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 현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성폭력범죄 >

구 분	대상 범죄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등(§21③) ◦ 강간등 살인(§21④)
청소년성보호법	◦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등(§20③) ◦ 강간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출·수입 등(§20④)

주: 괄호 안은 근거조문

- 즉,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강간등 살인을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註: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註: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위력 간음·추행 등 및 그 행위자에 의한 상해·치상, 살인·치사)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註: 강간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출·수입)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註: 강간등 살인)

- 법원행정처는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예외 인정은 전체 법체계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안 제20조제4항제4호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① 형사소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족 관계가 존재하는 성폭력범죄라고 하여 기타의 성폭력 범죄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겠는지, ② 친족 간 성폭력범죄와 강도상해·인질상해 등 불법성이 중한 다른 강력범죄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법무부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피해자의 나이·범죄 유형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다른 강력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문위원 박 혜 진)